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회)	

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, 금융위원회에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금융기관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(5급 1명, 7급 1명)을 증원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11. 13. ~ 11. 18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총계 “245”를 “247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243”을 “245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218”을 “220”으로 한다.

대통령령 제34941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별표 1 중 총계 “247”을 “245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245”를 “243”으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220”을 “218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1]

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18조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 정 안	증 감
총 계	<u>245</u>	<u>247</u>	+2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243</u>	<u>245</u>	+2
·	·	·	
·	·	·	
3급 또는 4급 이하	<u>218</u>	<u>220</u>	+2
·	·	·	
·	·	·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51